

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03.16 (화) 10:30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**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3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3월 4일

3. 제안 이유

-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13조)
- 나. 상위법령에 명시한 사항의 추가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그동안 시행된 조문 중 일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조례개정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